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긴급복지원법」(이하 "법") 제2조에서 규정한 '위기상황'의 사유 외에,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'위기상황'의 사 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(개정 2014.12.30.) 하였는바 이에 따른 '위기상황'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및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'위기상황', '긴급지원', '지원대상자'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(안 제3조)

다. 지원 내용, 방법, 절차 등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적용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,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제1조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: 별첨

3) 입법예고 : 2015. 9. 24 ~ 10. 14. 결과 : 의견 제출 없음

4) 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5) 인권 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 일부반영

○ 권고내용 및 부서 검토 결과

제 정 안	권고안 반영
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	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
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를 말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신, 출산 후 6개월 이내 인	2. <u>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</u>
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	이내
생계가 어려운 경우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실직, 폐업 등 사유로 수도,</u>	10. <u>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 체</u>
<u>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</u> 으로 인	납
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	
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	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12. <mark>실직,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</mark>	12. 월세 등 주택(임시거주지 포
둥 주택(임시거주지 포함) 임차	함) 임차료

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. ~ 15. (생략)

<신 설>

13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위기상황"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 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
- 2. "긴급지원"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(이하 "지원사유"라 한다)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3. "지원대상자"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입원환자, 치매노인, 알콜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2.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
- 3. 영유아, 장애아동 등 보호·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. 다만,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5.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, 폐가, 천막집, 다리 밑,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
- 6.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, 알코올·도박 중독,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
- 7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 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 려운 경우
- 8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추천한 경우
- 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10. 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1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12. 월세 등 주택(임시거주지 포함)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 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 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

- 13.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
 - 14.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 - 15.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, 정신건강증진센터, 자살예방센터,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
- 1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
- 제4조(지원내용·방법 및 기준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, 지원기준, 사후조사,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른다.
-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